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박준희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74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9월 14일

발 의 자 : 박준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미경, 김희걸, 유동균,
우미경, 김인제, 이승로,
김기대, 강구덕, 남창진,
박양숙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관련 법령인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7조의2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정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7조의2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(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제11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
3.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2.</u></p> <p><u>3.</u></p> <p><u>4.</u></p> <p><u>5.</u></p> <p><u>6.</u></p> <p><u>7.</u></p> <p><u>8.</u></p> <p><u>9.</u></p> <p><u>10.</u></p> <p><u>11.</u>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</u></p> <p>3. <u>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</u></p> <p><u>4.</u></p> <p><u>5.</u></p> <p><u>6.</u></p> <p><u>7.</u></p> <p><u>8.</u></p> <p><u>9.</u></p> <p><u>10.</u></p> <p><u>11.</u></p> <p><u>12.</u></p> <p><u>13.</u>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발생 요인 존재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박 준 희